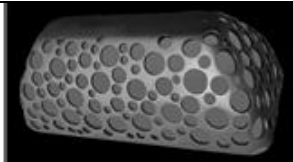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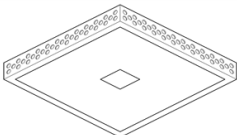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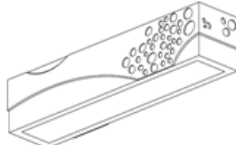


사건번호	2018허7477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7당166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물품의 명칭) 천장등
선고일	2019. 3. 21.	선고결과	기각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피고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또는 4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디자인은 (1) 하부프레임 테두리의 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원형 구멍들이 배열된 부분, (2) 상부 프레임 좌우 양쪽으로 상하부 프레임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형성된 부분, (3) 모서리에 내측 테두리에 접한 작은 원형 구멍과 걸림쇠가 형성된 부분 등이 선행디자인들과 차이가 있다. 차이점 (2)와 (3)은 일반 수요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위치하였거나 그 비중이 매우 작아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1)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위치하여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선행디자인 4에도 원형 구멍 배열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나 원형 구멍들의 생김새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등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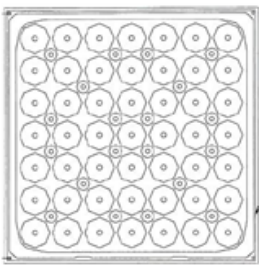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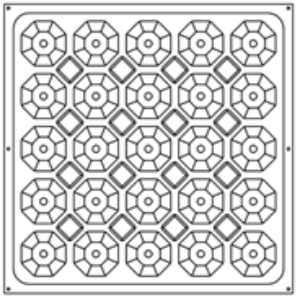
선행디자인 1, 4 및 3(또는 5, 6)의 결합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살펴보면, 각 선행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원형 구멍의 구체적 생김새, 크기, 개수, 밀집 정도, 배열 방법과, 기본프레임 형상 등 형태적 요소의 차이에서 오는 전체적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는 수준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조명등의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천장에 직접 부착하여 설치하는 조명등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각 선행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없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창작성, 천장, 조명등, 원형구멍

사건번호	2018허7859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8당751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물품의 명칭) 이중바닥재 스틸 판넬
선고일	2019. 3. 21.	선고결과	기각

등록디자인은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5)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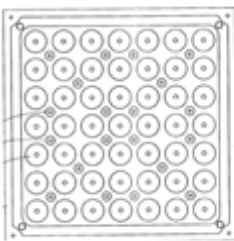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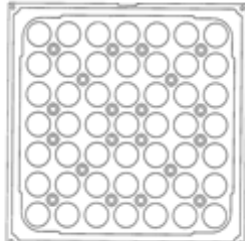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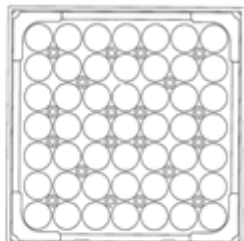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등록디자인에서는 8각형의 함몰부의 각 모서리가 위쪽과 아래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인접한 함몰부들은 서로 모서리끼리 접하도록 배치된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8각형의 꼭지점이 위쪽과 아래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서로 인접한 함몰부들은 꼭지점끼리 접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점, ㉡ 이러한 각 함몰부의 배치패턴의 차이로 인해 등록디자인에서는 4개의 함몰부로 둘러싸인 부분이 양 대각선의 길이가 동일한 정마름모 형태를 가지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각 모서리가 안으로 꺾여 있는 표창 형태를 가지는 점, ㉢ 등록디자인에서는 함몰부의 가운데 부분이 원형으로 보이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함몰부가 그 단부 역시 8각형으로 보이는 점, ㉣ 오목부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하판의 각 측면(총 4개)에 각 3개씩 오목부가 형성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하판의 한 개의 측면에만 2개의 오목부가 형성되고 그 오목부의 안쪽에 각각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된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금속 판넬에서는 하중 분산 등 기능적 요소로 하면에 계란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도록 다수의 함몰부 및 돌출부 등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 등록공보의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참고하여 보면 위 함몰부, 돌출부에는 디자인적 요소도 있음을 알 수 있고, 금속 패넬 또는 바닥재에서는 하면 계란판 구조의 형태가 제품 전체 디자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양 디자인에서 함몰부의 배치형태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부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하판의 배면을 계란판과 비슷한 구조를 갖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함몰부의 배치방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함몰부의 배치형태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유사의 폭을 좁게 보지 않으면 후속하여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함몰부의 배치각도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를 1에 결합하고자 시도할 동기는 크지 않을 것이어서 선행디자인 1, 5의 결합으로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행디자인 2 내지 4 어디에서도 8각형의 단면형태를 가지는 함몰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를 선행디자

인 1에 결합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도출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해서도 그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신규성과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키워드: 디자인, 신규성, 창작성, 8 각형, 함몰부, 배치각도, 결합, 바닥판, 패널, 유사의 폭

사건번호	2018나2124	사건명	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2016가합82689	제1심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알림표지판
선고일	2019. 3. 22.	선고결과	파기 이송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인데 이를 간과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 및 납품 협약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한편 기지급한 특허사용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며,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도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한편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어 2019. 3. 1. 시행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4조에 의하여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의 시행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구 법원설치법(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구 법원설치법 제4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도 '특허

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특허,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전속관할, 파기, 이송